

【 1 】 의장 · 부의장선거

제의년월일 : 1993. 4. 15.

제 의 자 : 의장 직무대행

제안이유

제1대 의회 전반기 의장 · 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 · 부의장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선출할 의장단 : 의장 · 부의장 각 1인
- 투표방법 : 무기명 비밀투표
- 의결정족수 : 재적의원 과반수

【 2 】 제1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

제의년월일 : 1993. 4. 16.

제 의 자 : 의장

제안이유

제17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- 회기 : 1993. 4. 15 ~ 4. 16 (2일간)